

의안번호	2203596
의 퇴 인	김우영 의원
회 답 일	2024. 9. 20.
추 계 번호	24B348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및 <u>위치정보산업의 진흥</u>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1.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u>위치정보산업의 진흥</u>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3의2. <u>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신설)</u>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u>위치정보산업의 진흥</u>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 제목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책에 “<u>위치정보산업의 진흥</u>” 추가	의무규정
2	안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u>위치정보산업의 진흥</u>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u>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u> 1. <u>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u>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u>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u>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u>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u> 4. <u>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u> 5. <u>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u> 6. <u>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u> 7. <u>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u> 8. <u>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치정보 이용 촉진 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5조(위치정보의 <u>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u>)	미대상: 현행법 시행령 ¹⁾ 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2. 상세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안 제3조)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에 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이용에 관한 시책 외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종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 제3조 및 제35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위치정보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아래 사업들을 추진 중임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표 1] 위치정보 관련 예산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내용	'24년 예산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o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위치정보 법체계 개선 및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교육 o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지원) 위치정보 법제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	2.15
위치정보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o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긴급구조 플랫폼 취약점 점 검 등 시스템 유지·보수 o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정확하고 끊임없는 Wi-Fi AP 기반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등 플랫 폼 안정적 운영 o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 긴급전화에 대한 정밀측위 시험을 통해 위치정보 전달성공률을 높이는 등 위치정보의 품질제고	14
<u>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u>	o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위치기반 비즈니 스 모델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특허출원, 비즈니스 네 트워킹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위치정보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o (위치정보 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자 가 겪는 법·제도, 기술, 경영 분야별 애로사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 컨설팅 지원	19.7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o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 한 사업자 법규준수 실태점검 및 위치정보 활용서비스 모니터링	8.5 ¹⁾

주: 1)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세부사업內 위치정보 관련 예산만 산정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포함한 새로운 위치정
보 시책을 마련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래의
시책에 반영될 내용과 이와 관련된 사업의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
로 예측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위치정보산업 진흥 관련 현행 사업

사업명	개요	2024예산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를 사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소·영세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LBS(Location Based Service) 시장 진입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LBS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총 19.7억원 ○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17.7억원 ①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 4.1억원 ② 우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업화 지원 : 9.9억원 ③ 국내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 1억원 ④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을 위한 기술 인프라 지원 : 2.8억원 ○ (위치정보 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2억원 ※ 법제도, 기술, 경영 분야 온·오프라인 전문 컨설팅 지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